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9. 27 선고 2021나3267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

1. G

2. H

3. I

4. J

5. K

6. L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

담당변호사 이철의

피고, 피항소인 강릉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경

변 론 종 결 2022. 8. 23.

판 결 선 고 2022. 9. 27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8. 10. 선고 2021가단31305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릉시 B 도로 509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6. 17. 접수 제187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행한다)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‘원고’를 ‘A’로 모두 고친다.
- 제3쪽 제9행의 ‘(이하 ‘선행 소송’이라 한다)’를 ‘(위 판결은 2017. 12. 8. A에게 송달되었다. 이하 ‘선행 소송’이라 한다)’로 고친다.
-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【아. 한편, A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22. 5. 10. 사망하였고, 그 배우자인 원고 G, 자녀들인 원고 H, I, J, K, L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.】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박재형, 판사 조영인, 판사 임세영